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과 정책적 시사점

김석오 새경제정부 일자리 관세협력과 사무관

I. 들어가면서

한·아세안 양측은 2005년 12월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 및 동 기본협정하의 분쟁해결제도에 관한 협정의 서명에 이어 2006년 8월 24일 동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¹⁾에 서명하였다.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은 2004년 11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FTA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2005년 2월부터 2006년 8월까지 1년 6개월간 13차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 끝에 체결한 것이다.

한·아세안 협정은 한·칠 FTA, 한·싱 FTA, 한·EFTA FTA 이후 우리나라가 4번째로 체결한 FTA이며, 이로써 우리나라도 본격적인 FTA 대열에 합류했다고 볼 수 있다. 동 협정은 당초 2007년 1월 1일부터 발효될 계획이었으나, 국회비준동의 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2007년 5월경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아세안 FTA는 여러모로 중대한 의의가 있다. 먼저

FTA 추진 이후 처음으로 거대경제권과 FTA를 타결했다는 점이다. 아세안은 우리나라 제5위의 수출시장이며, 대아세안 교역량은 92년 이래 우리나라 대외총교역의 10% 이상을 차지해 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 따르면 아세안과의 FTA 체결로 중장기적으로 대아세안 수출은 100억불, 무역흑자는 60억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80억불의 후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및 EFTA에 이어 아세안에서도 개성공단 제품에 대해 특혜관세를 부여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아세안 FTA는 기존의 FTA와 달리 기본협정을 먼저 체결하고, 동 기본협정을 바탕으로 상품무역협정을 비롯한 각 개별 하위협정을 체결하는 등 다소 복잡한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관세양허, 세이프가드,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 등 관세분야에 관한 내용은 상품무역협정에 규정하고 있다. 동 협정은 기존의 한·칠레, 한·싱 및 한·EFTA FTA와 관세양허방식, 원산지결

1)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는 태국을 제외한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리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등 아세안 9개국만 참여하였다. 태국은 협상에는 참여하였으나 국내 정치적인 사정으로 협정문 서명에는 불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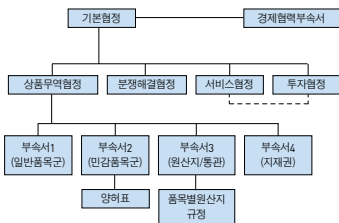
정기준 및 원산지증명방식 여러 분야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어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하에서는 먼저 한·아세안 FTA의 전반적인 구조를 살펴본 후 가장 핵심내용인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고 향후과제를 언급하고자 한다.

II. 한·아세안 FTA의 기본구조

한·아세안 FTA는 단계적으로 교섭·체결되는 ①기본협정, ②분쟁해결제도협정, ③상품무역협정, ④서비스무역협정, ⑤투자협정 등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협정은 발효시 FTA를 구성하는 법적 문서의 일부로 편입된다. 이중 기본협정과 분쟁해결제도협정은 2005년 12월 한·아세안 정상회의시 서명되었으며, 상품무역협정은 2006년 8월 서명되었다. 서비스무역협정과 투자협정은 현재 협상이 진행중이며, 2007년 12월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구조를 정리하면 <그림1>과 같다.

그림1 한·아세안 FTA 협정문의 구조



위 그림 중 관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상품무역협정은 21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문과 4개의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부속서 1, 2는 관세양허에 관한 사항, 부속서 3에는 원산지 및 통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부속서 4는 지적재산권 및 상품무역에 관한 WTO 협정문 리스트를 규정하고 있다. 상품무역협정은 관세감축 및 철폐에 관한 일반원칙, 원산지기준, 세이프가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1>과 같다.

표1 상품무역협정문의 구조

1조 : 정의	14조 : 제도정비
2조 : 내국인대우	15조 : 검토(Review)
3조 : 관세감축 및 철폐	16조 : 부속서 및 향후 도구
4조 : 투명성	17조 : 개정
5조 : 원산지기준	18조 : 타 협정과의 관계
6조 : 양허의 변경	19조 : 분쟁해결
7조 : WTO 규정	20조 : 보관
8조 : 수량제한, 비관세장벽 및 SPS 조치	21조 : 발효
9조 : 세이프가드조치	부속서 1 : 일반품목군 관세감축
10조 : 수지균형 세이프가드	부속서 2 : 민감품목군 관세감축
11조 : 일반특례	부속서 3 : 원산지기준
12조 : 보안특례	부속서 4 : 지적권 및 상품무역관련 WTO협정문 List
13조 : 지방정부	

III. 상품무역협정문의 주요내용

1. 관세양허

가. 관세양허 모델리티

아세안과의 협상은 아세안 10개국이 각 당사자로 참가하는 다자간지역무역협상이라는 특징을 고려하여 모

델리타에 따라 관세를 양허하는 특수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각 당사국별 경제발전 및 산업보호의 수준을 고려하여 한국, 아세안 6(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및 필리핀), 베트남 및 최빈국캄보디아, 라오스 및 미얀마(CLM) 등 4개 그룹으로 구분하고, 관세감축의 수준 및 양허기간을 달리 정하였다. 또한 민감도의 정도에 따라 국내산업의 피해 정도가 미미한 일반품목군(Normal Track:NT), 비교적 민감한 민감품목군(Sensitive Track:ST), 매우 민감한 초민감품목(Highly Sensitive List:HSL) 등 3개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국가군별로 상이한 양허 모델리티를 적용토록 하였다.

먼저 한국의 경우 일반품목군(NT)에 분류한 품목에 대해서는 협정 발효시 7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며, 2008년부터 95%의 품목을, 2010년에는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철폐하도록 하였다. 민감품목군(ST)에 해당하는 품목은 품목수 기준 10% 수입액 기준 10%이하로 제한하였으며, 초민감품목군(HSL)은 6단위 품목수 기준 200개 이하 또는 10단위 기준 3%이하 그리고 수입액 기준 3% 이하로 제한되며, 양허제외는 40개 품목이하로 제한된다.

아세안 6의 경우 민감품목군(ST)과 초민감품목군(HSL)은 한국과 동일한 모델리티가 적용되나, 일반품목군(NT)의 경우 한국보다 낮은 수준의 양허 모델리티가 적용된다. 즉, 2007년부터 50%의 품목에 대해 0~5%로 관세가 인하되며, 2009년에는 90%, 2010년에는 95%, 2018년에 100%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관세가 철폐된다.

베트남은 아세안 6에 비해 낮은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양허이행기간이 훨씬 장기적이다. 일반품목군(NT)의 경우 2013년에 50%의 품목에 대해 0~5%로 관세

가 인하된 후 2015년에 90%, 2016년에 95%, 2018년이 되어야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철폐가 이루어진다. 민감품목군(ST)은 품목수기준은 10%이하이나, 수입액 기준은 25%까지 인정된다.

표2 한·아세안 FTA 관세양허 모델리티

구분	한국	ASEAN 6	베트남	CLM
일반품목군 (NT)	발효시: 70%	2007: 50%	2013: 50%	2015: 50%
	2008: 95%	2009: 90%	2015: 90%	2017: 90%
	2010: 100%	2010: 95%	2016: 95%	2018: 95%
		2012: 100%	2018: 100%	2020: 100%
민감품목군 (SL)	품목수: 10%		품목수: 10%	품목수: 10%
	수입액: 10%		수입액: 25%	
초민감품목 (HSL)	품목수: 6단위 200개 또는 자국단위 3%		품목수: 6단위 200개 또는 자국단위 3%	
	수입액: 3%			
	양허제외: 40개			

최빈개도국인 CLM의 경우 베트남보다도 양허수준이 더욱 뒤떨어진다. 일반품목군(NT)의 경우 2015년에 50%에 대해 0~5% 관세가 인하된 후, 2017년에 90%, 2018년에 95% 그리고 2020년이 되어야 100%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가 철폐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표2>와 같다.

나. 관세철폐 방식

관세철폐 방식은 일반품목군(NT)의 관세철폐 방식과 민감품목군(ST)의 관세철폐 방식으로 구분된다.

일반품목군(NT)의 경우 현행 실행세율(2005.1.1 기준 MFN 세율)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적용하는 협정세율을 협정문 부속서 1에 규정하였다. 한국과 아세안 6은 동일한 방식이 적용된다. 예컨대, 현행 실행세율이 8%이고 관세감축연도가 2010년인 일반품목의 경우 2007년에는

5%, 2008년에는 3% 2009년에는 0%의 협정세율이 적용된다. 한국 및 아세안 6의 관세철폐 방식은 <표3>과 같다.

표3 한국 및 아세안 6개국의 관세철폐 방식

X = 실행세율	한국 및 아세안 6개국				
	2006	2007	2008	2009	2010
X ≥ 20%	20	13	10	5	0
15% ≤ x < 20%	15	10	8	5	0
10% ≤ x < 15%	10	8	5	3	0
5% < x < 10%	5	5	3	0	0
X < 5%	현행관세율유지				0

베트남과 CLM 국가의 경우 한국 및 아세안 6의 관세철폐 방식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베트남 및 CLM 국가에 적용되는 관세철폐 방식은 각각 <표4> 및 <표5>와 같다.

표4 베트남의 관세철폐 방식

X = 실행세율	베트남의 관세철폐 방식							
	2006*	2007	2008	2009	2011	2013	2015	2016
X ≥ 60%	60	50	40	30	20	15	10	0
40% ≤ X < 60%	45	40	35	25	20	15	10	0
35% ≤ X < 40%	35	30	30	20	15	10	0-5	0
30% ≤ X < 35%	30	30	25	20	15	10	0-5	0
25% ≤ X < 30%	25	25	20	20	10	7	0-5	0
20% ≤ X < 25%	20	20	15	15	10	7	0-5	0
15% ≤ X < 20%	15	15	15	10	7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5	0
7% ≤ X < 10%	7	7	7	7	5	0-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0
X < 5%	현행관세율유지							0

표5 CLM 국가의 관세철폐 방식

X = 실행세율	CLM 국가의 관세철폐 방식							
	2006*	2007	2008	2009	2012	2015	2018	
X ≥ 60%	60	50	40	30	20	10	0	
45% ≤ X < 60%	45	40	35	25	15	10	0	
35% ≤ X < 45%	35	3	30	20	15	5	0	
30% ≤ X < 35%	30	30	25	20	10	5	0	
25% ≤ X < 30%	25	25	20	20	10	5	0	
20% ≤ X < 25%	20	20	15	15	10	0-5	0	
15% ≤ X < 20%	15	15	15	10	5	0-5	0	
10% ≤ X < 15%	10	10	10	8	5	0-5	0	
7% ≤ X < 10%	7**	7**	7**	7**	5	0-5	0	
5% ≤ X < 7%	5	5	5	5	5	0-5	0	
X < 5%	현행관세율유지							0

민감품목군(ST)에 배치된 품목의 관세철폐 방식은 부속서 2에 규정되었다.

민감품목군(ST) 중 일반민감품목(Sensitive list)의 경우 한국과 아세안 6은 2012년에 2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감축한 후 2016년에 0~5%의 세율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베트남의 경우 2017년에 20%를 정액 감축한 후 2021년에 0~5%의 세율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CLM 국가의 경우 2020년에 20%를 정액 감축한 후 2024년까지 0~5%의 세율로 철폐 또는 인하된다. 이를 정리하면 <표6>과 같다.

표6 일반민감품목군의 관세철폐 방식

한국 및 ASEAN 6	베트남	CLM
2012: 20% 감축	2016: 0-5%로 인하	2017: 20% 감축
2021: 0-5%로 인하	2020: 20% 감축	2024: 0-5%로 인하

초민감품목(HSL)은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하여 각 개별 그룹별로 상이한 관세철폐 방식이 적용된다.

Group A에 분류된 품목의 경우 50%이상의 관세율이 적용되는 품목의 관세율은 50%이하로 인하하여야 하

는데, 한국 및 아세안 6개국은 2016년도에, 베트남은 2021년도에 CLM 국가는 2024년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Group B에 속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2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는데 한국 및 아세안 6개국은 2016년도에, 베트남은 2021년도에, CLM 국가는 2024년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Group C에 속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5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감축하여야 하며, 한국 및 아세안 6개국은 2016년도에 베트남은 2021년도에, CLM 국가는 2024년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초민감품목의 관세철폐 방식을 정리하면 <표7>과 같다.

표7 초민감품목군의 관세철폐방식

	한국 및 ASEAN 6	베트남	CLM
Group A	2016: 50%상한 적용	2021: 50%상한 적용	2024: 50%상한 적용
Group B	2016: 20% 감축	2021: 20% 감축	2024: 20% 감축
Group C	2016: 50% 감축	2021: 50% 감축	2024: 50% 감축
Group D	쿼터물량 적용	쿼터물량 적용	쿼터물량 적용
Group E	양허제외	양허제외	양허제외

다. 우리나라의 **환아세안 관세양허**

우리나라는 관세양허 모델리테에 따라 HS 10단위 기준 총 11,261개 품목중 10,403개 품목(93.2%)을 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였고, 481개 품목(4.3%)은 일반민감품목으로, 279개 품목(2.5%)은 초민감품목으로 나머지 98개 품목(0.9%)은 양허제외 하였다 협정문 부속서 1에서

는 일반품목군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규정하지 않았으며, 각 계약당사국이 관세양허 모델리테에 따라 자체적으로 양허세율을 정하고 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일반품목군 중 커피·소주·휘발유·립스틱·타이어 등 7,312개 품목(65.5%)은 협정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된다. 참치·미역·청주·탁주·포도즙·석유·인형·운동복 등 2616개 품목(23.4%)은 2008년에 관세가 철폐되며, 과일즙스·포도주·약주·인삼주·스웨터·유아용 의류 등 475개 품목(4.2%)는 2010년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표8 참조). 아울러 우리나라 농민들이 우려하는 쌀·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고추류 및 밀크조제품 등 민감농산품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었고, 새우(냉동·산선), 냉동감오징어, 강남콩, 매니옥 등은 일정 쿼터물량에 한하여 양허하였다(표8 참조).

라. 상호대응세율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에는 우리나라의 기존 FTA에서는 도입된 바 없는 '상호대응세율(reciprocal tariff rate treatment)' 개념이 새로이 규정²⁾되었다.

상호대응세율은 계약상대국이 민감품목군(ST)으로 양허한 품목을 일반품목군(NT)으로 양허한 계약당사국으로 수출할 경우 수입당사국은 상호주의에 따라 특혜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MFN 일반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개념이다³⁾. 예컨대, 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일반품목군으로 분류하여 협정발효와 동시에 관세를 즉시

2)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2 제7항

3) 수출당사국에서 해당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관세율이 10%이하이고 동 세율을 수입당사국에 통보할 경우 수입당사국은 수출당사국의 관세율과 수입국의 특혜 관세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단, 수출당사국이 양허제외한 품목은 수출당사국의 관세율이 10%이하인 경우에도 수입당사국의 MFN세율을 적용한다.

표8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관세양허 구조

구분	철폐단계	품목수	비율	주요품목
일반품목군	즉시	7,312	65.5	토끼, 꿀벌, 송어, 연어, 당근, 커피, 아스파라거스, 마요네즈, 자동차취발유, 아산화질소, 립스틱, 타이어, 인조모피, 필름, 세탁기, 레이저프린터, 텔레비전, 덤프차, 손목시계, 소주
	2008	2,626	23.4	오리고기, 참치, 미역, 마아가린, 비스킷, 석유, 제초제, 승용차용 타이어, 라디오, 화물자동차, 광학렌즈, 의로기기, 인형, 필터담배, 청주, 탁주, 포도즙, 번성예틸알콜, 양복, 코트, 자켓, 유아복, 운동복
	2010	475	4.2	소, 돼지, 낙지, 어육, 당근, 감자, 과일쥬스, 포도주, 위스키, 스웨터, 남성바지, 유아용의류, 약주, 포도주, 버본위스키, 인삼주, 남성바지
	(소계)	(10,403)	(93.2)	
일반민감품목	2012 20% 감축	481	4.3	가자미, 대구, 휘발유, 열화에틸렌, 부탄올, 칼라사진현상제, 제재목, 여자코트, 남자양모슈트, 실크스카프, 조주정, 고니, 기타위스키, 보드카
	2016 50% 상한	6	0.1	새우, 신선한 치즈, 오렌지, 사과, 배
	2016 20% 감축	224	2.0	오징어, 밀크, 녹각, 명고, 두리언, 마른김, 조제분유, 마늘, 양파, 보조사료, 섬유판, 합판, 발효주정
초민감품목	2016 50% 감축	36	0.	맥주액, 팝콘, 보리가루, 생강, 들기름, 맥주, 전분
	TRQ	13	0.1	새우(냉동·신선), 냉동감오징어, 강남콩, 매니옥
	(소계)	(279)	(2.5)	
	양허제외(E)	98	0.9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복어, 송어, 민어, 조기, 고추류, 바나나, 파인애플, 쌀, 쌀가루, 밀크의 조제식료품,
(총계)	11,261	100		

철폐하였으나, 말레이시아의 경우 초민감품목군(Group B)으로 양허 하였던 바,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우리나라로 수입될 경우 상호대응세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동 제도는 기본적으로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되었다. 적어도 자국이 체약상대국으로 수출하려는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으로 보호하지 말고 일반품목군으로 양허해야 한다는 의지가 내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일한 품목에 대해 자국은 개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대국만의 특혜관세 혜택만 누릴 경우 상

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동 제도는 강행조항은 아니며, 수입당사국의 선택사항이므로 동 제도의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자국법령에 따라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동 제도는 중·아세안 FTA를 모델로 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실제로 아세안측이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이 중국으로 수입될 경우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말레이시아도 동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참고가 되고 있다.

2. 긴급관세조치

한·아세안 FTA 발효이후 체약상대국산 수입물품의 급증으로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인하된 관세율을 MFN 세율 수준으로 인상하거나 연차적인 관세인하를 중지할 수 있다.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 3년, 연장 1년으로 총 4년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국내산업의 피해조사에 관한 절차, 잠정긴급관세 조치절차 등은 WTO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상의 절차가 그대로 준용된다.

그러나 긴급관세조치제도의 존속기간은 최종단계의 관세감축 또는 관세철폐 완성일부터 7년이며, 동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 한편, 긴급관세조치 대상이 된 물품이 아세안 전체 회원국에서 수입한 물량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할 수 없도록 하는 특례조항이 도입되었다. 한·아세안 FTA에서 도입된 긴급관세 조치제도는 한·칠레, 한·싱 및 한·EFTA FTA에서도

도입된 제도와 적용기간·재발동제한기간· 존속기간 등 여러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차이점은 <표9>와 같다.

3. 원산지규정

가. 원산지결정원칙

한·아세안 FTA의 특혜원산지규정은 상품무역협정 부속서 3에 규정되었다. 동 협정에 따른 특혜원산지규정은 수출당사국에서 완전히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완전생산기준, 체약당사국에서 역외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물품 중 일정한 요건을 갖춘 물품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실질변형 기준 그리고 원산지의 결정을 보완해 주는 보충기준으로 대별할 수 있다.

완전생산기준은 체약당사국에서 재배·수확한 식물성 농산물, 광산에서 채굴한 광산물, 내수면 또는 영해에서 어획 또는 양식한 수산물 등에 적용된다. 그러나 산동물의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에서 출생·사육된 것에

표9 FTA 긴급관세조치제도 비교

구분	한·칠레	한·싱가포르	한·EFTA	한·아세안
대상물품	농산물 중 양허품목	양허품목	양허물품	양허물품
피해조사 관련조항	조사규정 없음	WTO세이프가드 제3조, 제4조제2항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WTO세이프가드 협정상의 조사절차
조치내용	관세인하정지/ 관세를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를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를 인상	관세인하정지/ 관세를 인상
적용기간재발동	제한 없음	2년+2년(4년)	1년+ 2년(3년)	3년+ 1년(4년)
제한기간	없음	없음	3년	없음
잠정조치기간	120일	200일	200일	200일
존속기간	없음	없음	없음	7년
미소기준	없음	없음	없음	수입량 3%이하*

* 해당 물품이 아세안 전체 회원국에서 수입한 물량의 3%를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긴급관세조치를 발동하지 않는 제도

한하여 특혜관세가 인정된다. 따라서, 역외국에서 수입한 송아지를 사육한 한 때에는 출생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특혜관세 인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산동물에서 획득한 우유·계란·털 등도 계약당사국에서 출생·사육된 산동물에서 획득한 것에 한하여 특혜관세가 인정된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에서 부화한 병아리를 싱가포르에서 사육하여 계란을 획득하였을 경우 이 계란은 싱가포르에서 출생한 닭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므로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없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을 포함한 공해상에서 획득한 수산물의 경우 계약당사국에 등록된 선박 중 계약당사국의 국기를 달고 조업활동을 한 선박이 획득한 것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역외국에서 임차한 선박으로 획득한 수산물은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없다.

수출당사국에서 역외산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4단위의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거나 40%이상의 역내부가가치가 발생한 때에 한하여 특혜관세를 인정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농수산물·일부 민감농산물·섬유제품·철강·자동차 및 광학기기 등 2,465개 품목(HS 6단위기준)에 대해서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을 별도로 규정하였다. 동 기준에 따라면 김치는 6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되며, 인삼차는 역내산 인삼재료를 사용한 것 중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한다. 의류제품의 경우 계약당사국에서 재단·봉제가공을 거쳤거나 제조과정에서 40%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한 경우에 원산지가 인정된다. 자동차의 경우 45%이상의 부가가치가 발생하여야 원산지가 인정된다.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을 예시하면 <표10>과 같다.

표10 한·아세안 FTA의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예시)

품목번호	품명	원산지인정요건
제2류	쇠고기	완전생산요건
제3류	수산물	완전생산요건
1212.20.1010	김	완전생산요건
1904.90.1000	편살	4단위세번변경 or 부가가치 40%이상
2005.90.1000	김치	부가가치 60%이상
2103.90.1010	된장	4단위세번변경 or 부가가치 40%이상
2106.90.3011	인삼차	부가가치 40%이상(다만, 역내산 인삼을 사용한 것에 한함)
2208.90.4000	소주	4단위세번변경
2402.20.1000	필터담배	4단위세번변경(2403호에 속하는 비원산 지재료가격 60%이하)
4202.21.1010	가죽핸드백	4단위세번변경
6203.42.1000	청바지	2단위+절단/원사+절단+봉제 or 부가가치 40%이상
6401.10.0000	신발	4단위세번변경
8418.10.1010	냉장고	4단위세번변경
8450.11.0000	세탁기	4단위세번변경
8525.20.7039	휴대폰	4단위세번변경 or 부가가치 40%이상
8529.90.9640	TV	4단위세번변경 or 부가가치 40%이상
8542.21.2030	반도체메모리	4단위세번변경
8603.10.1000	철도차차	4단위세번변경
8703.22.1000	승용차	부가가치 45%이상
9004.90.1090	안경	4단위세번변경
9006.51.9000	카메라	4단위세번변경

나. 원산지결정 보충기준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를 결정하는 일반원칙 이외에 여타 FTA와 마찬가지로 누적기준, 미소기준, 원산지불인정공정기준 및 직접순송원칙 등 다양한 보완기준이 도입되었다.

1) 누적기준(Accumulation)

계약상대국의 원부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한 경

우 그 원부자재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인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예컨대, 말레이시아산 TV부품을 수입하여 국내에서 TV완제품을 조립하고, 동 TV완제품을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경우 말레이시아산 TV부품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취급하여 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누적이다. 동 규정은 역내산 원부자재의 역내간 교역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

2) 미소기준(De Minimis)

미소기준은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 중 세번변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역외산 재료비가 해당 물품 가격(FOB기준)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시 말해서 수입재료비가 10%이하에 불과할 정도로 미소한 수준인 때에는 원산지를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세번변경기준의 엄격성을 보완하고자 한 것이다. 다만, HS 50~63류에 해당하는 섬유제품의 경우에는 가격 대신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역외산재료의 중량이 당해 섬유제품 총중량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원산지가 인정된다. 섬유제품의 경우 통상 섬유함량을 기준으로 품목번호가 분류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가격 대신 원재료의 중량을 기준으로 미소기준을 적용토록 한 것이다.

3) 원산지 불인정공정기준(Non-qualifying operations)

해당물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표11>에 해당하는 단순·경미한 가공만을 거쳐 4단위 세번변경요건 또는 40%이상의 부가가치요건 등 협정에서 규정하는 원산지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 동

조항은 관세회피를 목적으로 약간의 가공작업만을 거쳐 우회수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농수산물의 경우 건조·냉동·분쇄·혼합·도축 등의 경미한 가공만 한 경우에도 2단위 또는 4단위의 품목번호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산품의 경우에도 소매포장 또는 단순조립만 해도 품목번호가 변경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예컨대, HS 1006호에 분류되는 쌀을 수입하여 HS 1102호에 분류되는 쌀가루를 가공한 경우 HS 2단위가 변경된다. 또한 HS 3003호의 페니실린을 수입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만 하면 HS 3004호로 변경된다. 경미한 가공공정을 통하여 세번이 변경되는 주요 사례를 예시하면 <표12>와 같다. 한편, 부가가치기준의 경우 페인트 또는 광택작업이나 테스트 또는 라벨링작업만 해도 가격조절을 통하여 40%이상의 부가가치요건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원산지규정의 허점을 악용하여 손쉽게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 가공작업만을 거친 물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원산지를 불인정하여 특혜관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불인정공정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세관당국의 자의성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과세마찰의 불씨를 안고 있기도 한다.

표11 한·아세안 FTA 원산지 불인정공정

• 운송·저장 보존 공정(건조·냉동·염수장 보관 등)	• 착색 또는 각 실행 작업
• 포장의 변경, 해제 및 조립	• 털피·씨제거 및 탈각
• 세척·세척·이물질 작업 등	• 연이, 단순 분쇄 또는 단순절단
• 섬유제품(50~60류)에 대한 다림질, 압착, 세탁, 라벨링, 스티칭, 오버로킹, 표백, 방수, 풀이거, 자수(편직기준 5%이하) 작업	• 체결·선별·구분·분류·등급
• 단순한 페인트칠, 광택작업	• 단순한 혼합작업
• 외피제거·포백·광택 작업	• 단순한 조립 또는 분해
	• 단순한 시험 또는 측정
	• 동물의 도축작업
	• 상표·의장·라벨 등 표시를 부착 또는 인쇄 작업

표12 불인정공정으로 인한 세번변경 사례(예시)

투입원료	생산공정	생산제품
멜치(0301)	건조	마른 멜치(0305)
쌀(1006)	제분	쌀가루(1102)
화강암(2516)	분쇄	자갈(2517)
석회석(2521)	분쇄·열처리	시멘트(2523)
페니실린(3003)	포장	소매용 페니실린(3004)
원목(4403)	절단	제재목(4407)
안경테(9003)안경렌즈(9001)	조립	안경(9004)

4) 역내부가가치 계산방식

한·아세안 FTA에서는 부가가치기준이 적용되는 품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2가지의 선택적인 역내부가가치 계산공식을 규정하였다. 각 계약당사국은 이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수입당사국이 역내부가가치의 적정여부에 관한 검증을 할 경우 수출당사국이 선택한 계산공식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⁴⁾.

① 집적법(Build-up Method):

$$\text{역내부가가치(RVC)} = \frac{\text{역내발생비용(VOM)}}{\text{제품가격(FOB기준)}} \times 100$$

역내발생비용(VOM)은 원산지재료가격, 직접노무비, 직접경상비, 운송비 및 이윤을 합한 가격을 말한다.

② 공제법(Build-down Method):

$$\text{역내부가가치(RVC)} = \frac{\text{비원산지재료비(VNM)}}{\text{제품가격(FOB기준)}} \times 100$$

4) 협정 부속서 3 제4조의 각주 3

비원산지재료비는 CIF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CIF 가격을 알 수 없거나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비원산지재료에 대하여 가장 이른 시점에서 확인된 지급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개성공업지구 생산물품에 대한 원산지인정특례

한·아세안 FTA에서도 한·싱 및 한·EFTA FTA에 이어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제한된 범위 안에서 원산지물품으로 인정하고 특혜관세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도입되었다. 다만, 협정문에서는 법적 근거만 마련^{부속서 3 제6조}하고 원산지인정요건 및 구체적인 대상물품은 양해각서(MOU) 형태로 규정되었다.

먼저, 개성공단 생산물품중 원산지를 인정하는 요건은 당해 제품의 가격중 역외산재료비가 40%이하이고, 동시에 당해 제품의 총재료비 중 역내산재료비가 60%이상이어야 한다. 대상품목은 아세안회원국별로 각각 100개(HS 6단위기준)로 한정된다. 이는 한·싱 FTA의 4,626개 품목, 한·EFTA FTA의 153개 품목에 비해 그 대상품목이 훨씬 축소된 것이다.

그 이유는 아세안 회원국들이 자국의 피해를 우려하여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특례인정에 극히 부정적이어서 아세안측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품목은 협상과정에서 대상품목에서 대부분 제외하였기 때문이다. 이외에 동 협정에서는 아세안측의 피해우려를 고려하여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대아세안 수출증가시 아세안측의 산업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세이프가드를 인정하고, 협정발효 5년 이후에 아세안측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표13 FTA별 개성공단 원산지특례조항 비교

구분	한·싱	한·EFTA	한·아세안
조항제목	특정물품의 취급	영토조항예외 (역외가공방식)	특정물품취급 (역외가공방식)
원산지 인정요건	한국 → 싱가포르 직수입요건	직접운송요건+ 역외산재료비율 40%이하 + 총재료비 중 역내산재료비율 60%이상	직접운송요건+ 역외산재료비율 40%이하 + 총재료비 중 역내산재료비율 60%이상
대상지역	개성공단 및 한반도 전체	지역제한 없음(EFTA도 역외가공제도 이용 가능)	지역제한 없음(아세안도 역외가공제도 이용 가능)
대상품목(HS 6단위)	4,626개	153개	각 회원국별 100개
기 타			특별세이프티드, 원산지특례철회 가능 한국세관의 원산지증명 및 원산지검증지원

경우 개성공단 원산지특례조항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규정되었다. 또한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는 한국 세관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토록 하였고, 아세안측의 원산지검증시에도 한국세관이 지원하도록 하는 특례규정이 도입되었다.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원산지특례조항을 각 FTA 별로 비교하면 <표13>과 같다.

4. 통관절차

한·아세안 FTA의 통관에 관한 절차는 부속서 3의 부록 1에 규정되었으며, 주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에 관한 사항과 원산지의 적정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 원산지 증명방식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기관증명제를 채택하였다. 즉, 수입자가 특혜관세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당사국의 권한 있는 기관⁵⁾에서

발급받은 원산지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한·칠레 및 한·EFTA에서는 수출자가 자율적으로 발급하는 원산지자율증명제를 채택하였으나, 아세안 회원국의 경우 법규준수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저개발국의 특성을 감안하여 부득이 전통적인 기관증명제를 채택할 수 밖에 없었다(표14 참조).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서 증명서를 발급할 때에는 수출전에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원산지가 적정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3부의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중 원본은 수입국 세관 제출용이고, 부분 1부는 발급기관 보관용이며 나머지 부분 1부는 신청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표14 FTA별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 비교

구분	한·칠		한·EFTA		한·아세안	
	한·칠	한·싱	한·EFTA	한·캐	한·아세안	
방식	자율증명	기관증명	자율증명	자율증명	기관증명	
증명자	수출자	세관, 자유무역지역관리원 또는상공회의소	수출자	수출자	정부 지정기관	

5) 아세안회원국의 증명서 발급기관: 브루나이(외교통상부), 캄보디아(상무부), 인도네시아(통상부), 라오스(상무부), 말레이시아(국제통상산업부), 미얀마(상무부), 필리핀(세관), 싱가포르(세관), 베트남(통상부)

한편,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서 수출당사국에서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인정하지 않고 특혜관세를 배제하는 때에는 동 원산지증명서의 원본을 2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이내에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이를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수출당사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이 당해 원산지증명서의 내용이 적정하다는 내용의 해명서를 작성하여 이를 다시 회신할 경우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시 특혜관세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동 규정은 계약당사국 간에 상호 신뢰성을 바탕으로 수출국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의 원산지 소명내용을 최대한 존중함으로써 통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나. 원산지 검증방식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칙적으로 간접검증제도를 채택하면서, 예외적으로 직접검증제도를 채택하였다. 즉, 수입당사국에서 원산지검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먼저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원산지의 사후검증을 요청하여야 한다. 수입당사국은 수출국의 사후검증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

사를 할 수 있다.

수입당사국으로부터 원산지검증을 요청받은 수출당사국⁶⁾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사후검증을 하고 그 결과를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에 회신하여야 한다. 수출당사국의 검증결과를 회신받은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은 원산지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다시 수출당사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간접검증에 따른 모든 조사기간은 6월이내이어야 한다.(그림2)참조.

한편, 수입당사국의 관세당국이 수출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를 대상으로 현지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조사대상자,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과 관세당국 및 수입자에게 조사예정 통보를 하여야 하며, 조사대상자(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때에 한하여 현지조사를 착수할 수 있다.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원산지결정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조사대상자와 수출당사국의 증명서발급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이의를 제기받은 수입당사국은 30일 이내에 재검토하여 최종결정서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지조사에 필요한 총기간은 현지조사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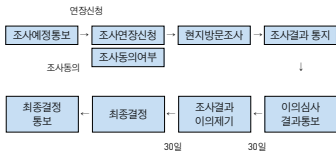
그림2 한·아세안 FTA 간접검증절차



6) 수출물품의 원산지사후검증기관: 한국은 세관, 아세안측은 원산지증명서발급기관임

시한 날부터 6월 이내로 제한된다. 해외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조사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동의에 관한 회신을 하지 않거나 조사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입당사국은 현지조사 대상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그림3) 참조.

그림3 한·아세안 FTA 현지조사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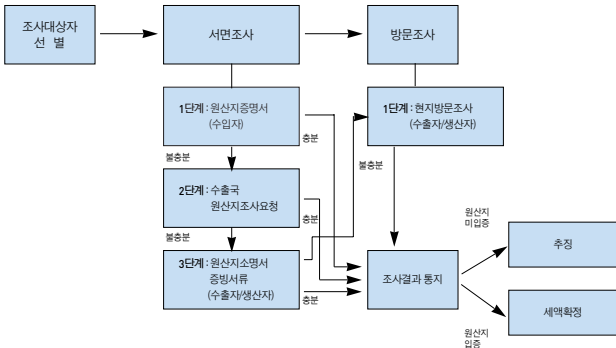
원산지 사후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수입되는 동일한 물품에 대해서는 그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특혜관세

의 적용을 일시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은 허용이 가능하다.

이상의 원산지검증절차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4>와 같다.

IV.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 과제

한·아세안 FTA는 우리가 거대경제권과 최초로 체결한 FTA로서 그 의미가 각별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교역규모가 비교적 미미한 한·칠, 한·싱 및 한·EFTA FTA에 비해 상당한 교역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될 뿐만 아니라 인건비가 저렴한 아세안 국가로의 투자도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5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아세안 수출은 274억불로서 총수출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아세안 FTA 체결로 관세가 철폐되면 더욱 늘어날 것



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대아세안 수입은 2005년 기준 260억불로서 총수입의 5.9%를 차지하였으며, 수입이 상당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표15)참조.

표15 한·아세안 수출입현황 (단위: 백만불)

	수출			수입		
	대세계(A)	대아세안(B)	B/A(%)	대세계(A)	대아세안(B)	B/A(%)
2005	284,419	27,432	9.6	444,445	26,064	5.9
2004	253,845	24,024	9.5	404,931	22,283	5.5
2003	193,817	20,253	10.5	390,216	18,458	4.7

이와 같이 중요한 한·아세안 FTA의 차질 없는 국내이행을 위하여 국회 비준동의절차와 함께 정부에서는 국내이행법령을 보완하고, 늘어나는 신규행정수요에 대비하여 관세행정시스템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 FTA 이행법령의 개정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의 주요내용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재산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기존 제도와 상충되는 내용은 국내이행법령 체계에 반영하여 시행상의 혼란과 오류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아세안 협정에서는 기존의 다른 FTA와 달리 민감품목군을 제외한 일반품목군은 관세철폐에 필요한 일반적인 원칙만 정하고, 구체적인 품목별 관세철폐 리스트는 각 계약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품목별로 적용되는 철폐단계와 적용세율을 국내이행법령으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상호대응세율제도의 이행어부도 각 계약당사국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계약상대국이 민감품목군으로 분류한 품목에 대해 특혜세율의 적용을 배제할 지 여부를 국내이행법령에 규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특혜관세의 적용에 필요한 특혜원산지의 결정기준과 원산지증명 및 사후검증에 필요한 원산지확인절차도 기존 FTA와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복잡·난해하여 국내 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는 이를 위하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협정 발효와 동시에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

나. FTA 이행에 필요한 후속조치

한·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서는 일반품목군에 해당하는 품목목록을 교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협정 발효 이후에 이를 상호 교환해야 하며, 양측이 협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델리티에 따라 양허세율을 국내적으로 정확하게 규정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아세안측에 시정을 요구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2007년부터 개정된 HS 코드가 전세계적으로 전면 시행됨에 따라 양허세율표, 품목별원산지기준표 등을 기존의 2002HS 코드에서 2007HS 코드로 변환할 필요성이 있다. 이 과정에서 기존에 합의한 양허모델리티의 변화가 발생할 수 있어, 아세안측과 재협의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품목별 원산지기준도 HS 코드가 신설·병합된 경우 재협상할 필요가 있다. 이를 방지할 경우 실제 이행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의 소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하여 한·아세안 양측은 한·아세안 관세 및 원산지위원회를 설치하여 2006년 11월초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체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 관세행정시스템의 정비

한·아세안 FTA가 발효되면 신규 행정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기준 대아세안 수출신고건수는 약 69만건에 달했고, 수입신고건수는 약 45만건에 달했고, 협정이 발효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표16) 참조.

표16 대아세안 수출입신고건수

	수출건수	수입건수
2005	688,286	444,445
2004	689,694	404,931
2003	645,589	390,216

이는 곧 특혜관세 신청 및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업무의 수요가 그 만큼 증가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변화에 맞추어 관세행정체제를 신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모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아세안 FTA에서는 원산지기관증명제를 채택했기 때문에 아세안으로 수출되는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측 세관당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사후조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까지 아세안측 세관당국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아세안측의 특혜관세가 배제될 수 있어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종전에는 수입물품의 관세포탈 등에 중점을 두었다면 한·아세안 FTA 체제하에서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관리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라. 수출입자에 대한 홍보

한·아세안 FTA에 따른 특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한 품목별 원산지인정요건, 원산지증명절차 및 원산지확인절차 등이 여타 FTA와 다를 뿐만 아니라 복잡·난해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한 수출입자의 경우 예측하지 못했던 손해를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수출입자는 원산지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수출자가 보내주는 원산지증명서만 세관에 제출하면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 해외 수출자의 원산지증명 오류 또는 사후 수입국 세관당국의 원산지검증에 대한 협조거부로 인한 특혜관세 배제 등 모든 책임과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입자에게 전가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역계약 단계에서부터 원산지요건의 충족여부, 원산지인증서류의 구비여부 및 수입통관 이후 해외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원산지조사협력여부 등을 철저히하게 따져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전파해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경우 아세안측의 양허세율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입수하는 것이 쉽지 않아 특혜관세의 혜택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현재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협정세율은 국내이행법령을 통하여 국민에게 공개가 되지만 계약상대국의 협정세율은 각 계약상대국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 불편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각 계약상대국의 국내법령에 따른 협정세율표를 입수하는 데로 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